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식품영양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석사, 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식품영양학과 소속 교수들은 식품영양학과 학위과정(석사, 박사, 통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학생의 모집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식품영양학과 교육과정소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의 제정, 개편,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내규 별첨 참고)

제5조 (과목개설) 식품영양학과 교육과정소위원회에서 과목개설에 관련된 개편,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과목개설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 (교·강사 배정) 식품영양학과 교육과정소위원회에서 교·강사 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① 학위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1학기 말(편입생은 편입한 학기 초)에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 지도교수를 정한다. 다만, 논문 지도교수는 2년(박사과정 지도교수는 3년) 이내에 정년퇴임하지 아니하는 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 후 2년까지 논문지도를 할 수 있

다. <개정 2011.9.26.>

② 논문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과 관련하여 표절, 대필 등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7.>

③ 선정된 논문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전공변경, 지도교수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논문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9.17.> <번호개정 2012.9.17.>

④ 논문 지도교수의 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은 논문 제출 1학기 전, 박사학위과정은 논문 제출 2학기 전에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과정은 박사학위과정을 적용하되 석사학위만을 취득하는 학생은 석사학위 과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2.9.17.>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대학원 재학 중 석사학위 과정은 제1저자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편 이상 게재, 박사학위과정은 제1저자로 SSCI, SCI, SCIE 등재학술지 1편과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1편 이상 게재 시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석사학위 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박사학위 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4개 과목을 정하여 시험을 치르고, 논문 지도교수의 과목은 1개만 선택할 수 있다.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내국인 학생은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연수)로 인한 면제 신청 시 영어 성적으로 한정한다.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학위 과정) 석사, 박사, 통합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제12조 (졸업) 석사, 박사, 통합 과정 등의 모든 학위과정은 논문 제출을 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연구계획서는 졸업 학기의 한 학기 전에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식품영양학과 교육과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14조 (예비발표) 예비발표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한 학생은 졸업 학기에 중에 시행한다.

제15조 (논문심사위원) ① 학위논문 심사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석사학위 논문은 3명, 박사학위 논문은 5명)이 한다. <개정 2011.9.26.>

②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 중 1명을 심사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갖는다. <개정 2011.9.26.>

③ 논문심사는 석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3분의 2, 박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26.>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0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